

의안번호	제 37 호	의 결 사 항
의결 년월일	2004. 9 . .	

#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2004. 9. 7.

#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
----------	----

제출일자 : 2004. 9. 7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변경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나. 법령 명칭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령명 정비

○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

### 다. 개정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 의료보호대상자 ⇒ 수급권자

○ 의료보호 ⇒ 의료급여

○ 의료보호심의위원회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 대상자” 한다)”를 “수급권자”로 하며,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

제6조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며,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중 “의료보호”를 각각 “의료급여”로 한다.

제8조본문 및 같은조제3호중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조제1호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조제2호중 “의료보호법 제22조”를 “의료급여법 제24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사천시<u>의료보호기금</u>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의료보호법</u>의 규정에 의한 <u>의료보호대상자</u>(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u>의료보호사업</u>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u>(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세입과 세출)이 회계는 <u>의료보호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u>의료보호대상자</u>에 대한 <u>의료보호비</u>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p> <p>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①<u>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u>에 의한 <u>기금운용관</u>은 사회복지과장, <u>기금출납원</u>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지출)①<u>기금운용관</u>은 <u>보호대상자</u>에게 <u>의료보호</u>를 행한 <u>의료시설의장</u>이 <u>의료보호비</u>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u>기금부담액</u>과 <u>대불금</u>을 구분 결정하고 <u>대불금</u>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납입고지서</u>를, <u>기금출납원</u>에게는 <u>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u>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명 : 사천시<u>의료급여기금</u>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p> <p>제1조(---) ----- <u>의료급여법</u> --- -----<u>수급권자</u>----- -----<u>의료급여사업</u>----- -----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u>----- ----- -----</p> <p>제2조(----)-----<u>의료급여기금</u>----- -----<u>수급권자</u>-----<u>의료급여비</u>----- -----</p> <p>제3조(-----)①<u>시장</u>은 <u>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u>를 위하여 <u>기금운용관</u>과 <u>기금출납원</u>을 둔다.</p> <p>1. <u>기금운용관</u> : <u>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u> 2. <u>기금출납원</u> : <u>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출)①-----<u>수급권자</u>--- ---<u>의료급여</u>----- <u>의료급여비</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발 취

## 의료급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제24조 (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④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